

(제 3안)

수신 총무처장관

제목 관보게재의뢰

1. 다음사항에 대하여 관보에 게재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게재종별 : 고시문

나. 게재건명 : 도심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 고시

다. 게재근거 :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

첨부 고시문 사본 2부. 끝.

(제 4안)

수신 : 중구청장

참조 : 도시정비과장

제목 : 도심재개발사업계획(건축계획) 변경결정

1. 도심지재개발사업 다동구역 제11지구에 대해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결정 고시하였음을 통보하니 관계업무에 참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에게 보일것.

첨부 1. 고시문 사본 1부

2. 관계도면 1부. 끝.

(제 5안)

수신 종로구 신문로2가 89-27 (주)금성텔 대표이사 한종언 귀하

제목 도심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 통보

1. 귀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재개발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재개발사업계획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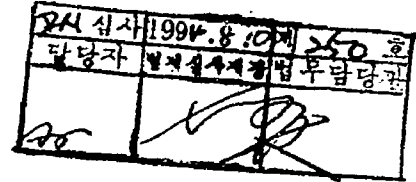
첨부 고시문 사본 1부. 끝.



서울특별시

고 시 (안)

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- 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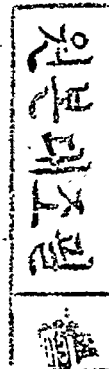
도심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

1. 우리시 도심재개발사업중 건설부고시 제367호('73. 9. 6)로 구역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42호('90. 7.23)로 사업계획 결정된 다동구역 제11지구의 재개발 사업계획(건축계획)이 변경되어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와 중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4년 8월 일

서울특별시 장



가. 사업명칭 : 다동구역 제11지구 도심재개발사업

나. 시행구역 및 면적 : 중구 다동 74의2호의 21필지 - 3,238㎡

다.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 : 중구 다동 53번지의 9필지 - 1,044.40㎡

○ 건축계획 변경결정조서

지구명	구분	대지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율 (%)	연면적 (㎡)	층 수	주된용도	1층용도
다동구역	기정	2,193.60	44.99	523.57	19,809.45	지상12 지하5	업무시설	-
제11지구	변경	2,193.60	44.99	661.27	21,525.79	지상15 지하5	업무시설	로비 업무시설

0 다동구역 제1지구 토지조사

번호	지 번	지목	지 적(㎡)	시 행 면 적 (㎡)		
				계	대 지	공공용지
1	다동 53	대	656.2	434.2		434.2
2	다동 61	◇	56.2	56.2	2.5	53.7
3	다동 62-2	◇	238.0	238.0	123.7	114.3
4	다동 63	◇	138.8	138.8	104.2	34.6
5	다동 64	◇	59.5	59.5	32.2	27.3
6	다동 65	◇	52.9	52.9	52.9	
7	다동 66	◇	138.8	138.8	68.6	70.2
8	다동 67-3	◇	16.3	16.3	16.3	
9	다동 67-4	◇	73.7	73.7	73.7	
10	다동 67-11	◇	6.0	6.0	6.0	
11	다동 68	◇	36.0	36.0	36.0	
12	다동 69	◇	109.1	109.1	109.1	
13	다동 70	◇	343.8	343.8	343.8	
14	다동 71	◇	175.2	175.2	99.7	75.5
15	다동 72	◇	352.4	352.4	313.1	39.3
16	다동 73-1	◇	31.0	31.0	31.0	
17	다동 73-2	◇	151.7	151.7	151.7	
18	다동 73-3	◇	56.1	56.1	56.1	
19	다동 74-1	◇	257.0	257.0	188.5	68.5
20	다동 74-2	◇	390.1	390.1	263.3	126.8
21	다동 78-2	◇	30.5	30.5	30.5	
	다동 97-1	드	2,218.5	90.7	90.7	
계			5,587.8	3,238.0	2,193.6	1,044.4

